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Contents

정병곤
동강대학

Byeong-Gon Jeong(kant@hanmail.net)

요약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중심어 : | 사법방해죄 | 허위진술죄 | 실체진실 발견 | 참고인조사 | 위증죄 |

Abstract

The beginning that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s commonly known to Korea is through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W. J. Clinton in 1998.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federal law of the United States is comprehensively provided with a general and a particular rule laying emphasis on the obstruction of legal judiciary proceedings. But, 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ourt decisions, there are no such system like the 'Obstruction of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ult, in terms of the criminal-judicial system, some cases even telling a lies has more benefits than revealing the truth and it is discouraged to cooperate the achievement of judicial justice, which make difficulties in investigation and realizing real truth. For this reason,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makes efforts to introduce the 'Obstruction of Justice'. Nevertheless we should examine from all angles that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is indeed the alternative in our circumstances. Most of the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Obstruction of Justice' and also the revised bill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questions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rather than for the introduction of a general rule on the 'Obstruction of Justice'.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of investigative agency needs to consider concern about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witnes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reinforced in the first pla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 of Suspect and Witness' for investigation process of investigative agency is undesirable now.

■ keyword : | Obstrution of Justice | False Statement | Fact-finding Mission | Reference Inquiry | Perjury |

I. 서론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객관적인 물적 증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수사절차나 공판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진실하게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처럼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소추기관으로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에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사법방해죄나 허위진술죄로 처벌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 사법방해죄나 허위진술죄와 같은 규정은 없다. 재판절차에서 증인이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기도 하며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단순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에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1]. 또한 법원은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한 경우에 그 참고인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2]고 판시하고 있다.

최근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관련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3].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수사상 편의주의적 측면만 강조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4].

이하에서는 먼저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허위진술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의 근거들을 각각 살

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각 견해들을 검토하여 사법방해죄 도입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사법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로 규율하는 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기본이 되는 규정은 연방법(United States Code; U.S.C.) 제18장(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01조에서 제1520조까지이다. 그 중에서 사법방해죄의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제1503조(적법한 법집행에 대한 사법방해)가 핵심이 되는 조항이다.

1.1 사법방해죄

사법방해죄는 미국연방법률 제18절의 73장에 약 20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제18절 제1503조이다[5]. ‘누구든지 ①부정한 수단으로 혹은 협박, 위력을 사용하여, 혹은 위협적인 편지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서 대·소배심원, 미연방 법원의 공무원, 혹은 미연방 치안관사나 판사가 실시하는 감정 기타 절차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려고 노력하거나 ②배심원이 평결 기타 기소에 찬성하거나 참여하고 있거나 했었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한 경우, 혹은 ③상기 공무원, 치안관사 등의 직무수행을 이유로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한 경우, 혹은 ④부정한 수단으로 혹은 협박, 위력을 사용하여, 혹은 위협적인 편지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한 노력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①사람을 살해한 경우 연방법 제1111조와 제1112조의 규정된 벌칙규정에 따른다. ②살인 미수나 A 혹은 B류의 중죄(Felony)에 대한 사건의 배심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병과한다. ③그 밖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혹은 병과한다. ④한편 이 사건 범죄가 형사재판절차와 관련하여 물리적 폭력의

위협 또는 물리적 폭력으로 저질러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고형의 장기가 가중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연방법 제1503조의 사법방해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6].

첫째, 연방 사법절차가 계속 중이어야 한다. 사법방해 시도시에 절차가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사법절차와 연관되지 않은 경찰이나 연방국세청, FBI, 기타 정부부처가 주도하는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허위진술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둘째, 피고인이 그 절차를 알았거나 고지를 받았어야 한다. 사법방해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사법절차가 계속 중임을 피고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동 범행을 행하여야 성립한다. 수사가 진행 중임을 몰랐다면 사법방해죄의 유죄판결에 필요한 고의가 결여된다.

셋째, 피고인이 부정하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법절차를 방해하거나 사법절차에 대한 방해를 시도했을 것 이다.

1.2 허위진술죄

미연방법률 제18절 제1001조에 의하면 피의자를 포함한 누구라도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 받는다[7]. 피의자 등이 위 조항에 따라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①피의자 등이 진술을 하였을 것, ②진술이 허위일 것, ③그 진술이 중요한 것일 것, ④위 진술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였을 것, ⑤정부기관이 위와 같은 진술을 받을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형사사법 절차는 물론이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되는데, 위 조항은 선서 여부나 구두로 진술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진술이나 표현 등을 허위로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친족 등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달리 미국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어 친족 등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도

처벌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연방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진술한 경우에는 동조에 의해 처벌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직무를 촉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를 들어 허위사실로 제3자를 무고하거나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경우 등)에만 동조로 처벌할 수 있으며 단순히 연방검사의 질문에 대답한 소극적인 경우에는 비록 그 진술이 허위일지라도 동조로 처벌할 수 없다 [8].

허위진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 즉 중요한 사실관계(material fact)에 대한 진술이어야 한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그 진술이나 행위가 별개의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의 소관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9]. 허위진술이 그 정부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 중요성이 인정된다[10].

2. 독일

독일은 사법방해죄를 따로 모아서 규정하지 않고 사법방해죄의 성격을 가지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11]. 특징적인 면은 일부 중요범죄에 대한 정보를 지득하고 있는 자가 그 실행 및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여 사법절차에의 협력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증에 대한 구성요건을 셋으로 나누어 선서없는 허위진술, 선서위반을 규정하는 외에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고죄로 처벌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3. 일본

일본은 형법 제7장에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에 관한 죄의 장에서 우리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형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본형법 제105조의 2(증인등위협)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의 수사 혹은 심판에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의 친족에게 당해 사건에 관해 정당한 이유없이 면회를 강요하거나 강담위박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압박을 받아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혹은 공판기일외에서의 증인신문 중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12].

III.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대한 논의

1. 사법방해죄나 허위진술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

사법방해죄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는 미국의 사법방해죄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방해에 관하여 제한적인 입법을 하되 그 요건도 미국의 경우보다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방해죄를 도입해서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모하고,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며, 피해자 보호를 하자고 한다[13].

1.1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법개혁을 통해 엄격한 증거법칙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것에 비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들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14].

1.2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에 관한 아무런 심적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되나,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법정에서 배척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인의 허위 진술시 처벌을 하여 참고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참고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위주의 수사절차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이다[15].

1.3 사회 방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

각종 보석 석방 조건의 다양화,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의 도입,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 등과 같이 그 동안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의 도입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미온적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고인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사회방위를 위한 수사력 강화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16].

1.4 행정조사절차와의 균형 유지 필요

건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서는 행정상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이 되어 있으나[17], 그보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관련된 형사법에서는 그와 같은 입법이 없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18].

2. 사법방해죄나 허위진술죄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

사법방해죄를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는 대한변협과 시민단체 등이 내세우는 수사편의주의적 발상,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그리고 기존제도의 활용 등을 논거로 삼는다.

2.1 공판중심주의 침해와 수사편의주의

참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술을 반복할 경우 이를 허위 진술죄로 처벌한다면 공판중심주의가 무너지게 되어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하며,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의 허위여부를 가려내야 하는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수사권 과잉을 불려와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19].

2.2 참고인보호 제도의 미흡

참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한다면 그 전제로 참고인 보호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주로 증인보호제도로 논의되어 왔으나 여기에서의 증인에 협의의 재판상 증인만이 해당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수사절차상의 참고인 또한 보호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실체상 동일인인 경우가 많고 다만 형사절차의 단계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3 기존 제도의 적극적 활용

사범방해죄와 허위진술죄로 보호할 법익은 기존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범인은닉죄, 문서손괴죄 등 일반 형법규정의 '적극적' 활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기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판이 있다[20].

2.4 선서하지 아니한 증인과의 형평성 문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데, 현 형사법에서 선서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선서 절차 없이 한 허위의 진술을 처벌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법무부의 개정시안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진 형

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진술증거확보 방안,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범방해죄의 도입, 피해자 참가제 도입,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의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사범방해죄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사건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권행사의 왜곡을 방지하여 실제적 진실발견을 도모하고, 피의자 자백위주의 수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참고인에 대한 수사에 주력이 가능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 및 신장에 기여함으로써 사범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1].

3.1 사범방해죄의 개정시안

사범방해죄의 주요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 하는 경우 처벌하는 허위진술죄를 신설하고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회유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폭행·협박 등에 의한 사범방해죄를 신설하며 선서 없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선서 없는 허위증죄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시안은 다음과 같다.

제152조의2(허위진술)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하여 줄 목적으로 수사하는 공무원에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2].

4. 검토

국내에서 논의되는 대부분의 사범방해죄의 입법론은 미국의 사범방해죄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증인·참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의 행위 및 방해 행위를 중점으로 도입하자는 것으로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실제적 진실의 발견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참고인에 대한 수사에 주력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신장에 기여하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수사의 일방적인 편의성만을 추구하여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구조에 대한 침해와 함께 국민의 인권을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이며, 현재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허위진술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참고인의 허위진술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처벌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행 입법으로도 해석론을 통하여도 허위진술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논거로 반대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을 도입할 때는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제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송구조에 어울리도록 수정되어 도입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 제1503조 4항과 같은 사범방해죄 일반규정을 우리 형사법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우리 소송구조와 수사구조에 맞게 미국법을 적절하게 변형 또는 수정되어 도입되든가 아니면 우리 소송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수사의 효율성의 증진과 진실이 통하는 사회풍토로의 변화,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면에서 법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범방해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에 앞서 참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려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범방해죄와 허위진술죄로 보호할 범익은 기존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범인은닉죄, 문서손괴죄 등 일반 형법규정의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진술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나 소송구조에 어울리도록 수정되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나 소송구조에서 수사기관과 법원 그리고 시민이 같은 수준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수사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도 없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범방해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에 앞서 참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려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범방해죄와 허위진술죄로 보호할 범익은 기존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범인은닉죄, 문서손괴죄 등 일반 형법규정의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범상 위증죄가 선서하지 않은 허위증언과 선서한 허위증언을 구별하여서 전자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후자는 처벌하고 있는 근본 입법취지를 재음미해 본다면 포괄적인 사범방해죄 및 피의자에 대한 허위진술죄의 도입보다는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수사 장비의 현대화 등 다른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 형사법에 미국과 같은 사범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사범방해죄의 규정들을 도입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 형사구조와 수사구조가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IV. 결 론

적법절차와 신속한 재판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을 하는 것은 사법정의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범방해죄 등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의 입법을 도입할 때는

[1]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3] “내부증언자’, 감형·불기소처분 도입”서울신문, 2011년 7월 13일자, 10면.
 [4] “사범방해죄 신설, 인권침해 우려 높아”, ytn, 2011년 1월 11일 보도.
 [5] Section 1503 (Influencing or injuring officer or

juror generally)

- (a) Whoever corruptly, or by threats or force, or by any threatening letter or communication, endeavors to influence, intimidate, or impede any grand or petit juror, or officer in or of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or officer who may be serving at any examination or other proceeding before any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or other committing magistrate, in the discharge of his duty, or injures any such grand or petit juror in his person or property on account of any verdict or indictment assented to by him, or on account of his being or having been such juror, or injures any such officer, magistrate judge, or other committing magistrate in his person or property on account of the performance of his official duties, or corruptly or by threats or force, or by any threatening letter or communication, influences, obstructs, or impedes, or endeavors to influence, obstruct, or impede, the due administration of justice,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ubsection (b). If the offense under this section occurs in connection with a trial of a criminal case, and the act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involves the threat of physical force or physical force, the maximum term of imprisonment which may be imposed for the offense shall be the higher of that otherwise provided by law or the maximum term that could have been imposed for any offense charged in such case.
- (b) The punishment for an offense under this section is--
- (1) in the case of a killing, the punishment provided in sections 1111 and 1112

(2) in the case of an attempted killing, or a case in which the offense was committed against a petit juror and in which a class A or B felony was charged,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20 years, a fine under this title, or both; and

(3) in any other case,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a fine under this title, or both.”

[6] 김종구,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4집, p.332, 2009.

[7] “1001. Statements or entries generally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whoever, in any mat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ve, legislative, or judicial branch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knowingly and willfully--

(1) falsifies, conceals, or covers up by any trick, scheme, or device a material fact;

(2)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r

(3) makes or uses any false writing or document knowing the same to contain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entry;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if the offense involves international or domestic terrorism (as defined in section 2331), imprisoned not more than 8 years, or both.

(b) Subsection (a) does not apply to a party to a judicial proceeding, or that party's counsel, for statements, representations, writings or documents submitted by such party or counsel to a judge or magistrate in that proceeding.

(c) With respect to any matter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subsection (a) shall apply only to--

(1) administrative matters, including a claim for payment, a matter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property or services, personnel or employment practices, or support services, or a document required by law, rule, or regulation to be submitted to the Congress or any office or officer within the legislative branch; or

(2) any investigation or review, conducted pursuant to the authority of any committee, subcommittee, commission or office of the Congress, consistent with applicable rules of the House or Senate.”

[8] United States v. Bedore, (1972, C.A.9 Wash.) 455 F.2d 1109.

[9] United Staes v. Wolf, (1981, C.A.10 Okla.) 645 F.2d 23.

[10] Robles v. United Staes, (1960, C.A.9 Ariz.) 279 F.2d 401.

[11] 그 예로는 도주원조죄, 특수도주, 범죄불고지,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방해, 선서없는 허위진술, 선서위반, 선서에 갈음한 허위보증, 무고, 증거인멸, 법인은닉, 법률왜곡, 진술강요, 책임없는 자 등에 대한 형사소추, 책임없는 자 등에 대한 집행 등이다.

[12] 안성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 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저스티스, 제88호, p.218, 2005.

[13] 김석우, “사범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4, 2002.

[14]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 방안”, 법조, 제537호, pp.154-155, 2001.

[15] 김석우, “사범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40, 2002.

[16] 김석우, “사범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5, 2002.

[17] 건축법 제82조 제7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제3호, 제14조의2.

[18] 김석우, “사범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5, 2002.

[19] 이상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JURIST, p.32, 2003.

[20] 황만성, “사범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p.268, 2009.

[21]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

[22]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

저 자 소 개

정 병 곤(Byeong-Gon Jeong)

정회원



- 1988년 2월 :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1년 10월 : 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2009년 8월 ~ 현재 : 동강대학 강사

<관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